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한 기부상한액 예외 규정〉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7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23인
2. 제 안 일 : 2025. 04. 21
3. 회 부 일 : 2025. 04.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 사랑 기부금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한도를 없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9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상한액(연 2천만원)을 적용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② (생략)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단 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강원·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지역 피해 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

건이 있었음. 그런데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연간 기부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 지역에 대한 직접적 기부를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¹⁾).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되는 고향사랑기금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²⁾에서 개정안과 같이 재난 피해 지역에 상한 없이 기부를 할 수 있게 할 경우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직접적 기부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부금액의 상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도한 기부 유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해 제8조의2의 지정모금 및 기부제도³⁾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한 신속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 ⑤ (생략)